보건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1호, 15호, 1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대상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11호, 제15호, 제17호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시설의 장은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이수

- **기간**: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요건**: 1회, 1시간 이상 교육 수강

결과제출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붙임양식으로 제공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안내한 기간 내에 제출합니다.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 준비
(공문붙임양식 실시기관용 결과보고서와 교육 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제출**

교육을 미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시설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교육 방법

온라인 교육

1. 보건복지부 위탁 온라인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이수
2.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 영상을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이수

집합 온라인 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이수

※인터넷 활용 등에 어려움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활용**할 것을 권고하며 교육계획 시 사유 제시

집합 강사 교육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강사 교육 시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실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PPT 교육 교재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지침에 맞게 실시하여 교육 이수

